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김문환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저작권의 변화

저작권은 전통적으로 작가의 글이나 화가 등 예술가의 작품과 관련을 가졌다. 영·미 등의 역사를 보면 저작권은 원래 소설, 음악, 회화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영화, 레코드, 방송, 비디오 등의 출현에 의해 이들에 대해서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하였다. 저작권법은 이와 같이 판권을 보호하는데서 출발하여 그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과 이용방법의 등장으로 그 구조자체가 복잡한 법이다. 이런점에서 저작권의 역사는 그 적용범위의 확장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인공위성이나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전달이나 수신 뿐만 아니라 기타 일군의 신기술과 관련을 갖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1986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그 적용범위로 하기에 이르렀으며,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말은 다의적인 바 대체로 컴퓨터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신문기사, 학술논문의 초록, 서지사항,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각종 수식데이터, 법령, 판례, 그 초록 등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통합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이를 꺼내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혹자는 이를 컴퓨터속에 들어 있는 자료실이라고 표현하는 바, 이는 곧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의 흥수를 잘 저장하였다가 가끔시에 이용케 하는 것이라고 비유해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에서 만든 "LX"라는 판결 데이터베이스를 두드리면 자기가 보고 싶은 판결을 단 1분이내에 찾아서 프린트까지 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작성작업중에 창작적 행위를 한 자가 이에 대한 저작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가 기업이나 대학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 등의 단체명의 저작(저작권법 9조 참조)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양한 정보의 축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①원자료정보 수집 설정 ②데이터베이스의 체계의 설정 ③정보의 분석 가공 ④키워드의 설정

부여, 파일의 축적이라는 작성과정을 거쳐 구축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한 그 종류의 분류가 달라진다. 오늘날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통신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국제적인 입법동향

데이터베이스는 원자료의 선택·분류 등에 창작성을 가진 것 뿐만 아니라, 원자료의 정정이나 보정, 초록의 작성, 원자료가 도시된 2차 가공부분에도 창작성이 발휘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점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의 문제와 데이터베이스를 입출력할 때 그 개개 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저작권보호는 이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원문헌이나 원자료의 저작물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이나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1980년 및 1982년의 정부, 전문가 위원회에서 채택한 권고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의 수집물 또는 편집물로서 저작권

법으로 보호되며 또한 인포트, 아웃포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검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미국에서는 1976년의 의회 보고서(House Report)¹⁾와 저작권있는 저작물의 신기술상 사용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의 1978년 최종보고서²⁾에서 컴퓨터프로그램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받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의 하나인 편집물(compilations)이라고 명백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CONTU 보고서에 기초하여 1980년의 저작권법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일정한 관점에서 다수의 원자료를 수집, 선택·분류한 [편집저작물]로서 규정하여, 그 컴퓨터 사용에 관한 저작권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다. 영국에서도 1973년에 설치된 저작권법 개정위원회의 1977년의 Whitford Committee Report 및 그 개정에 관한 1981년 및 1985년의 그린페이퍼에서 편집저작물로 보았다.

일본에서는 문화청이 1985년 9월에 [저작권심의회 제7소위원회(뉴미디어 및 데이터베이스 관계)보고서]를 발표하였는 바 등 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이라고 선언하여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 5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데

이터베이스로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정리, 색인어의 부여 기타의 행위에 의해 창작성을 가진 것은 편집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198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³⁾

미국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명확히 한 각국 저작권법에서도 컴퓨터 사용에 관한 복제권 및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드문 형편이다. 그런데 1991년 3월 미국연방대법원은 인명별 전화번호부(white page)의 창작성을 논한 *Feist Publications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111 S. Ct. 1282 판결에서 사실만의 편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자된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논을 부정하고, 저작물성이 없는 사실을 창작적인 방법으로 선택, 정리, 배열(selection, coordination, arrangement, SCA)한 경우에만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⁴⁾

이 판결은 데이터베이스산업계에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저작물로 평가되어진 일정하게 정리된 정보의 집합체까지는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아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어렵다는 해석이 된다. 다시 말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그 자체 저작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압도적으로 많은 인명록, 통계, 주가, 매출고 등의 정보에 관계되는 소위 fact database의 보호에 대해 충격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Moorhead 하원의원은 [1996년 데이터베이스 투자 및 지적소유권 침해 방지법](Database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Antipiracy Act of 1996) 초안을 1996년 5월 23일 연방하원의 법사위원회에 제안한 적이 있다. 동법안은 앞에서 말한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이론을 채택하여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시장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25년간 보호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점에서 동법이 제정되었다면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대기업에게는 큰 횡재가 될 수 있었다.

EU의 데이터베이스 지침

1996년 2월에 확정된 EU의 데이터베이스 지침(Directive)에 의하면 충분한 독창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보호를 받게 되고, 나아가 비록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라도 불공정한 출력(unfair extraction)을 방지할 권리 등에 의한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를 통해 보호된다는 태도이다.

1) H. R. Rep. No.94-1476 at 54.

2) CONTU Final Report, p38-43 (1978).

3) (日本) 經濟企劃廳·總合計劃局編, 知的所有權, 1988年, 38面.

4) Jay Dratler, Intellectual Property Law: Commercial, Creative, and

Industrial Property, 1991 p.5-30.

이 Directive의 목적은 EC에서의 데이터베이스보호를 위한 조화적이고 안정된 법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2중제도(two-tier system)를 채택함에 따라 독창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한 저작권보호가 인정되며, 저작권보호를 받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는 불공정출력권(unfair extraction right)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15년간 인정하였다.

Directive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하는 것이 비록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에서 저작권을 창조해 낼만큼 충분히 독창적이 아닌 경우(예컨대, 전화번호부)에도 그에 소요된 시간과 금전적 투자를 인정하고 있다. Directive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자가 남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허가받지 않은 출력(extraction)을 하거나 재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 불공정출력권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입력되기 전에 이미 저작권을 갖고 있었던 어떤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일본도 1986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일본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을 일반 편집저작물과 구별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을 가리키는데 대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소재로 되는 정보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초

록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수치정보나 화상처리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래프나 일람표를 만드는 등 가공이 되며, 그 밖에도 원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 추출된 주제나 중요개념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부여되는 등 단순한 편집저작물과는 다른 창작성이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원자료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문제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의 문제와 데이터베이스를 입출력할 때 그 개개 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그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저작권 보호는 이의 작성에 사용된 원문헌이나 원자료의 저작물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중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에 사용된 원문헌이나 원자료는 판례처럼 없는 경우도 있으나,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대한 사용허가를 얻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개개의 정보가 저작물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함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자와 개개 정보의 작성자 양쪽에 저작권이 적용된다. 또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독창성이 없어 저작권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EU처럼 독자적 권리로 보호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제국이 한결같이 취하는 태도

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자는 방법도 두가지이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상의 편집물이나 수집물로 보아 보호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이 이에 속한다. 또 하나는 일본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을 일반 편집저작물과는 구별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1994년의 저작권법 개정

데이터베이스는, 축적된 정보를 컴퓨터로서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그 작성과정에 편집저작물과는 다른 창작행위가 더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라는 점에서만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1994년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 제4717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기로 하였다(1995년 7월 1일 시행). 즉 현행 저작권법 제6조1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편집물의 하나로 보았다.

어쨌든 1994년 법개정이래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저작권법 제6조 1항이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함으로써 신문이나 법원의 판례를 연대순으로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는 창작성이 없으나, 정보의 검색방법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DC**